

상표심사동향

T r a d e m a r k
E x a m i n a t i o n
R e p o r t

MARCH 2019
Vol. 11('19.3)

- | 상표법 70주년
- |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 제16차 한·일 상표 전문가 회의 및 제5차 심사실무 세미나
- | 제2회 특허청-변리사회 상표분과 간담회 개최
- | 제27차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점검회의
- |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상품명칭' 목록 공개
-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 | 상표법 제정 70년, 주요 변천사
- |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 | 상표 출원·등록 현황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한 해가 시작된다 싶더니 어느새 3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고, 현재는 과거를 품고 있으며, 미래는 현재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 해는 상표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상표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해방 후 미군정법령으로 「1946년 특허법」이 제정되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해 규정하게 되었지만, 상표법은 이보다 3년 늦은 1949년 11월 28일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상표법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3차례 전문개정과 28차례(타법에 의한 개정 제외)의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1조)

이를 위해 1973년[법률 제2606호] 등록전에 출원공고제 신설, 1995년[법률 제5083호] 색채상표제도 도입, 2004년[법률 제7290호]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 가능, 2011년[법률 제11113호]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를 상표 범위에 포함, 2014년[법률 제12751호]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2018년[법률 제15581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적격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때로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전부개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 개정을 시행하였고, 때로는 국제협약을 반영한 새로운 상표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세계화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선 웹진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올 해는 ① 디지털 상품을 상품범위에 포함하도록 유체물 요건 완화, ② 온라인상의 상표사용을 ‘상표사용’의 한 유형으로 추가, ③ 출원인 편의와 권리자 보호를 위한 직권재심사, 재심사 청구제도 및 심판에서의 정정청구제도 등 도입 관련하여 상표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브랜드, 디자인과 같은 무형의 지식이 국부(國富) 창출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심사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산업계 등 출원인의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허청과 함께 힘 없이 달려온 상표법 7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70년을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고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1.8. 공포, 7.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리인 선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지정제도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평가 대행 전담기관 기준(안 제10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다. 우선심사의 대상 확대(안 제12조)

우선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 대상에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선등록상표권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와 상표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을 추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일부절차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외국인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외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48조)

상표전문기관의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등록취소' 기준으로 변경함.

라. 국제출원 관련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안 제80조의2)

국제출원의 경우 일부서류 제출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 없이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마. 복수 표장 상표출원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3호 서식)

상표견본의 작성방법을 개정하여 상표 견본란에 사용할 상표 하나만 적도록 함.

| 상표법 등 개정 TF |

상표법 등 개정을 위해 팀장, 개정 담당자(간사) 및 5명의 심사관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 현재 4회에 걸쳐 개정관련 회의를 개최하였고, 올 3월까지 활동 예정 (개정 담당자와 심사관 모두 변호사 자격을 소지)



제16차 한·일 상표 전문가 회의 및 제5차 심사실무 세미나



추진배경

- (상표 전문가회의) 양국 상표법·제도, 심사기준, 상품분류, TM5* 협력 등에 대한 최신 정보교환 및 협력 방안 논의
* 상표(Trade Mark)분야 5개 선진청(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의미
- (심사실무 세미나) TM5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식별력' 비교 연구



회의기간 및 장소

- (상표 전문가회의) '19. 3. 5(화) ~ 6(수),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실
- (심사실무 세미나) '19. 3. 7(목),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실



주요 성과

- 지역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목록 교환
* 한국측 신규 지리적 표시 중 상표법에 의한 보호(22개), 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4개)와 일본의 지역단체표장(32개) 및 지리적표시(15개) 리스트 교환
- 유사군코드 비교연구 지속시행 합의('19년 14개류 실시)
- 일본의 출원량 증가에 따른 심사품질 유지 방안 등 논의
- 양측 상표법 및 심사기준 변경사항 상호 문의
- 제8차 TM5 중간회의 및 연례회의 일본 주최 계획 설명
- 심사실무 세미나를 통해 '식별력'에 대한 집중 논의 실시



GI 리스트 교환

- 매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통해 지리적표시 목록 상호 교환 실시
 - 회의 현장에서 지리적 표시 목록을 교환하고, 양청 상표심사시스템에 탑재하여 심사에 참고하기로 합의

〈 2019년 추가된 GI 관련 추가 건수 〉

(건)

한 국		일 본	
지리적단체표장 (상표법)	22(누적:427)	지역단체표장	32(누적:659)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4(누적:188)	지리적 표시	15(누적:73)

- 상표심사 활용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교환 리스트에 지역명칭에 대한 일본어(한자) 및 한국어 추가 기재를 제안, 우리측은 동 제안에 찬성



상표법·심사기준 개정 현황 및 품질 제고 방안 등

- (출원 및 심사처리) '16년 상표출원은 161,859건에서 '17년 190,939건으로 약 18% 대폭 증가함에 따라 1차 심사 통지까지의 평균 기간(FA Pendancy)을 7 ~ 9개월로 조정
- (Fast-track 심사)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 등에 게재된 상품을 지정한 국내 출원은 2달 가량 조기 심사
 - 조기심사 건의 추출은 특허청에서 자체 실시하므로, 출원인의 별도 신청은 불필요(수수료 없음)
- (식별력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정) 일본의 경우 식별력을 완화해서 판단하고 있었으나, 식별력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유저의 평가를 반영하여 심사기준을 개정
- (유저편의 제고 활동) '19년 1월부터, 일본특허청 웹사이트의 '상품·서비스의 분류' 코너에서 ① 수용할 수 없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 공개, ② '상품·서비스 명칭 관련 Q&A' 란을 새롭게 추가



제2회 특허청-변리사회 상표분과 간담회 개최

— '19.3.14.(목) 13:30~15:30, 특허청 서울사무소 5층 중회의실 —



추진배경

- 특허청-변리사회 간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정례 정책간담회 실시에 합의
- 상표분야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법·제도 개정수요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의견 청취 및 반영을 통해 상표제도 발전방안 마련



간담회 개요

- (참석자)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김명섭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인수 상표심사정책과장, 상표법·심사기준 담당 2인
 - (대한변리사회) 분회장, 총무이사, 분과장, 변리사, 과장 등 총 10명
- (주요 내용) 최근 특허청의 제도개선 내용 공유, '19년 상표법 개정추진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문의, 기타 법·제도 의견교환 등
 - (제도개선) 제1회 변리사회와의 간담회 질의 및 건의사항(상표 우선심사대상 확대,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서명 권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 의견 공유, 우선심사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상표법 시행령 개정안 및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서명 권한 관련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상표법 개정) 온라인상 상표의 사용 형태를 추가하는 상표 보호범위 확대 검토(안), 재심사, 직권재심사 및 정정청구제도 도입 등검토(안)





제27차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점검회의

-'19.3.22(금), 14:00~16:00, 특허청 소회의실-



추진배경

- 심사과/파트 단위의 자율적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파트장 중심의 품질관리능력 강화 필요
- 파트장에 의한 Case-study를 통해 심사관의 일관된 심사처리를 유도 하고 심사 노하우 및 사례 공유



회의개요

- (참석자) 심사과장, 파트장, 심사기준담당 및 심사관 등 30명
- (회의방식) 심사관 공유가 필요한 심사사례를 주제발표하고 회의 참석자간 자유 토론 및 논의



회의안건

- (주제 1)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에 따른 선등록 유사 적용 기준”
 - 일반 수요자의 인식도 변화에 따른 특정 지명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인정 및 이에 따른 선등록 상표와 유사여부 판단 논의
- (주제 2): “우선권 주장, 신규성의제 불인정 불복절차 마련”
 - 디자인 심사단계에서 우선권주장 및 신규성의제 주장 불인정 확정시 이의 적법여부를 다룰 수 있는 특허심판 절차 신설 논의
- (주제 3): ‘이달의 심사관’ 선발 절차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상품명칭' 목록 공개

상표출원 시 출원인은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출원서에 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심사관으로부터 보정을 요구하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2개월내에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과 그에 따른 보정서 제출 등으로 심사관은 심사부담이 가중되고 출원인은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출원서의 불명확 상품명칭 기재로 인한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상품명칭이 기재된 출원서를 분석하여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을 발굴하고,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상품명칭'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kipris를 통해 4월에 공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서식작성기에도 탑재하여 출원인이 출원단계에서 올바른 상품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상품명칭' 목록 공개 및 서식작성기에서의 안내 서비스를 통해 불명확 상품명칭 기재 오류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출원인의 권리획득 지연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상품명칭 예시

불명확 명칭	불명확 사유	명확한 명칭(예)
가공 농산물	포괄명칭	가공 채소
		가공 곡물
가구도소매업	1개이상의 서비스 (서비스 분리필요)	가구도매업
		가구소매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8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황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구성)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프랜차이즈] + 저작권 + 기타지식재산권
- (18년 지재권 무역수지) ▲7.2억달러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2015	2016	2017r	상반	하반	2018p	상반	하반
수지	-40.0	-16.6	-16.9	-8.3	-8.6	-7.2	-5.3	-1.9
산업재산권	-34.4	-22.8	-21.5	-9.2	-12.2	-16.0	-9.7	-6.3
특허 및 실용신안권	-25.8	-19.9	-12.0	-4.5	-7.5	-16.5	-9.4	-7.1
디자인권	-4.3	0.1	-1.5	-0.7	-0.8	-1.8	-1.0	-0.9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4.3	-3.1	-7.9	-4.1	-3.9	2.3	0.7	1.6
저작권	6.8	8.4	5.9	1.7	4.3	14.0	6.9	7.2
문화예술저작권	-2.9	-2.7	-4.1	-1.5	-2.6	-3.5	-1.7	-1.7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9.6	11.1	10.0	3.1	6.9	17.5	8.6	8.9
기타지식재산권	-12.4	-2.1	-1.4	-0.7	-0.6	-5.3	-2.5	-2.8

18년 국가별 무역수지 현황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억달러)

	2015	2016	2017r	상반	하반	2018p	상반	하반
수 지	-40.0	-16.6	-16.9	-8.3	-8.6	-7.2	-5.3	-1.9
미 국	-66.8	-49.4	-46.6	-18.4	-28.2	-46.7	-20.6	-26.1
중 국	19.6	20.4	21.7	11.6	10.1	30.2	16.1	14.2
일 본	-2.7	-3.1	-5.2	-2.5	-2.7	-7.0	-5.3	-1.7
영 국	-2.2	5.1	4.5	2.3	2.2	0.7	-0.1	0.8
독 일	-2.7	-3.6	-4.2	-2.6	-1.6	-4.1	-2.3	-1.8
기 타	14.7	14.0	13.0	1.3	11.7	19.7	6.9	12.7
(베트남)	(16.8)	(18.4)	(24.1)	(11.5)	(12.5)	(24.6)	(12.4)	(12.2)
(프랑스)	(-2.9)	(1.1)	(-3.9)	(-2.4)	(-1.5)	(-4.2)	(-2.9)	(-1.4)

18년 교차통계

(유형별 × 기관형태별)

- 국내 대기업은 특실(-12.9억달러)에서 적자를 보였으나,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7.3억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7.5억달러)에서 흑자

(억달러)

	합계	기업	대기업		중소·중견		비영리법인 및 기타
			국내	외투	국내	외투	
수지	-7.2	-6.9	15.3	-3.5	15.5	-34.1	-0.4
산업재산권	-16.0	-16.2	2.9	-1.2	-1.0	-16.8	0.2
특허 및 실용신안권	-16.5	-16.6	-12.9	-0.4	-1.1	-2.2	0.1
디자인권	-1.8	-1.8	-1.5	0.1	0.3	-0.6	0.0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3	2.3	17.3	-0.9	-0.2	-14.0	0.1
저작권	14.0	14.6	14.6	-0.9	16.6	-15.7	-0.5
문화예술저작권	-3.5	-2.9	-2.9	-0.9	3.0	-2.1	-0.6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7.5	17.5	17.5	0.0	13.6	-13.6	0.1
기타지식재산권	-5.3	-5.3	-2.3	-1.4	-0.1	-1.6	-0.0

(유형별 × 산업별)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특실(-18.1억달러)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3.6억달러)에서는 흑자를 기록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8억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5.2억달러)에서 흑자를 보임

(억달러)

	합계	제조업	(전기 전자)	(자동차 트레일러)	(화학제품 의약품)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 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기타
수지	-7.2	-12.1	-7.4	9.2	-4.6	-0.0	-0.2	5.3	-3.0	11.8	-0.3
산업재산권	-16.0	-18.9	-17.3	9.6	-3.7	0.0	-0.1	3.3	-1.0	5.4	-0.3
특허 및 실용신안권	-16.5	-15.9	-18.1	6.2	-2.2	0.0	-0.0	-0.6	-0.3	-0.4	0.0
디자인권	-1.8	-2.0	-0.2	0.1	-0.1	0.0	-0.0	0.1	0.1	0.0	0.1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3	-1.0	0.9	3.4	-1.5	0.0	-0.1	3.8	-0.8	5.8	-0.4
저작권	14.0	11.7	12.9	-0.4	-0.2	-0.0	-0.1	2.4	-1.7	6.4	0.1
문화예술저작권	-3.5	-1.3	-0.7	-0.3	-0.1	-0.0	-0.0	-2.2	-0.1	1.2	0.1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7.5	13.1	13.6	-0.1	-0.0	-0.0	-0.0	4.6	-1.7	5.2	-0.0
기타지재권	-5.3	-4.9	-3.0	0.0	-0.7	-0.0	-0.0	-0.4	-0.3	-0.1	-0.0

(유형별 × 국가별)

-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미국(-9.9억달러)에서는 적자를 보였으나 중국(15.8억달러)에서는 흑자를 기록

(억달러)

	합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기타	(베트남)	(프랑스)
수지	-7.2	-46.7	30.2	-7.0	0.7	-4.1	19.7	24.6	-4.2
산업재산권	-16.0	-39.5	21.0	-8.1	-5.9	-1.9	18.4	24.1	-3.7
특허 및 실용신안권	-16.5	-29.4	4.9	-4.7	-3.9	-1.0	17.7	22.7	-2.9
디자인권	-1.8	-0.1	0.4	-0.7	-0.1	-0.0	-1.2	0.2	-0.6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3	-9.9	15.8	-2.7	-2.0	-0.8	2.0	1.2	-0.2
저작권	14.0	-2.2	9.0	1.3	6.7	-2.2	1.5	0.5	-0.4
문화예술저작권	-3.5	-3.5	1.7	1.1	-0.3	-0.5	-2.0	0.1	-0.3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7.5	1.2	7.3	0.2	7.0	-1.6	3.4	0.4	-0.1
기타지재권	-5.3	-5.0	0.2	-0.1	-0.1	-0.1	-0.2	0.0	-0.1



상표법 제정 70년, 주요 변천사

상표법 제정 이후 2018. 12월까지 총 31회(타법 개정 제외)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개정 순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구 분	내 용
상표법 [법률 제15581호, 2018. 4. 17., 일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유통 · 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함으로써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상표법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상표법 [법률 제12751호, 2014. 6. 11., 일부]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개인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인 상표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
상표법 [법률 제11113호, 2011. 12. 2., 일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소리·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포함,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
상표법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제도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대폭 간소화
상표법 [법률 제8190호, 2007. 1. 3., 일부]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상표의 범위를 확대,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자기 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구 분	내 용
상표법 [법률 제7290호, 2004. 12. 31., 일부]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團體標章)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의 영업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
상표법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출원인이 상표등록 출원전에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식별력이 생긴 때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간의 사용으로 축적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
상표법 [법률 제5355호, 1997. 8. 22., 일부]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상표법 [법률 제5083호, 1995. 12. 29., 일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UR/TRIPS)등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색채상표제도를 도입하여 상표제도의 세계화에 부응하고, 산업계의 상표선택범위를 확대
상표법 [법률 제4597호, 1993. 12. 10., 일부]	▲상표등록후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가능, ▲갱신등록기간의 만료후에도 6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상표권자의 단순과실로 인한 갱신등록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구제
상표법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	▲경제 발전 및 국제교류의 확대에 상표기능 강화 및 국제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재산성을 제고, ▲상표의 이전제도를 현실화하여 상표사용자의 상표선택기회를 확대
상표법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	▲파리협약의 규정과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새로운 단체표장제도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제도를 신설
상표법 [법률 제2506호, 1973. 2. 8., 전부]	▲현실정에 맞지 않거나 조문간 불균형한 점 등을 보완, ▲등록전에 출원공고제를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
상표법 [법률 제71호, 1949. 11. 28., 제정]	▲상표에 관한 구법령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표의 도용 등으로 상거래상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

〈보도자료〉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 ‘우래옥’, ‘미조리’, ‘신세계’ 순으로 밝혀져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우래옥’(69.11월 등록)이며 ‘미조리’(70년 등록)와 ‘신세계’(74년 등록)가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업종 범위 :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요식업,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등 포함

** 분석대상 : '19.3.1. 현재 존속 중인 상표권(최초출원부터 포함)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내 장수상표들을 권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개인”의 경우, ‘우래옥’(69.11월 등록), ‘미조리’(70년 등록), ‘남강’(75년 등록), ‘함지박’(80년등록), ‘진고개’(81년 등록) 순이었으며,
- “법인”은 ‘신세계’(74년 등록), ‘삼성물산주식회사’(77년 등록), ‘라세느/LA SEINE(주식회사호텔롯데, ‘79년 등록)’ 순으로 확인되었다.

* 권리주체 구분은 최초 등록시 권리자 기준

외국 상표의 경우, ‘McDONALD’S’(69.2월 등록), ‘에스비 쇼꾸헝가브시끼가이샤’(74년 등록), ‘BASKIN-ROBBINS’(78년 등록) 등이 최장수 상표로 확인되었으며 ‘McDONALD’S’는 ‘우래옥’(국내상표 최고)을 제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식당업은 개인출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해당되며 경쟁도 치열하다. 개인 등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사업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하여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장기간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면서,

- “이들을 위한 지재권 교육·상담,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표권은 등록 이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폐업,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소멸된다.

- 따라서, **상표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국내 식당업 존속상표 중 상위 25위 현황

연번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표명	최초 권리자
1	19690705	4100002940000	19691126	우래옥	장진건
2	19700212	4100003250000	19700501	미조리	김애경
3	19731027	4100009710000	19740702	신세계(SHINSEGYE)	주식회사 신세계
4	19740204	4100010480000	19750527	남강	김종건
5	19750619	4100012950000	19770420	삼성물산주식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
6	19780321	4100018670000	19790209	라세느 LA SEINE	주식회사호텔롯데
7	19780819	4100020310000	19790721	더 아스터 스위트 THE ASTOR SUITE	주식회사호텔롯데
8	19780819	4100020320000	19790721	더 베레뷰 스위트 THE BELLE-VUE SUITE	주식회사호텔롯데
9	19780819	4100020330000	19790721	더 샤롯데 스위트 THE CHARLOTTE SUITE	주식회사호텔롯데
10	19780819	4100020340000	19790721	더 피콕 룸 THE PEACOCK ROOM	주식회사호텔롯데
11	19780819	4100020350000	19790721	메트로-폴리탄 클럽 METROPOLITAN CLUB	주식회사호텔롯데
12	19780819	4100020360000	19790721	전망대 CHON MANG DAE	주식회사호텔롯데
13	19780819	4100020370000	19790721	안나벨스 ANNABELLE'S	주식회사호텔롯데
14	19780819	4100020380000	19790721	더 프린스 유진 THE PRINCE EUGEN	주식회사호텔롯데
15	19780819	4100020400000	19790721	포석 정 POSUK JONG	주식회사호텔롯데
16	19780819	4100020410000	19790721	무궁화 MU GUNG HWA	주식회사호텔롯데
17	19780819	4100020420000	19790721	사가 SAGA	주식회사호텔롯데
18	19780819	4100020430000	19790721	도림가든 THO LIM GARDEN	주식회사호텔롯데
19	19780819	4100020440000	19790721	더 루비 룸 THE RUBY ROOM	주식회사호텔롯데
20	19780819	4100020450000	19790721	더 펄 룸 THE PEARL ROOM	주식회사호텔롯데
21	19780819	4100020470000	19790721	더 에메랄드 룸 THE EMERALD ROOM	주식회사호텔롯데
22	19780819	4100020480000	19790721	더 제이드 룸 THE JADE ROOM	주식회사호텔롯데
23	19790827	4100023700000	19800128	함지박	안차수
24	19800509	4100028050000	19810106	진고개	정상철
25	19800801	4100029020000	19810209	기와집	한미대



상표 출원 · 등록 현황

상표 출원 동향

서류철, 건수,
% (전년 동월/동기 대비)

15,786 (19.2)

2019년 2월

34,893 (19.0)

2019년 누계

내국인
개인 · 법인별
출원 (건수)

개인 7,023

2019년 2월

개인 15,069

2019년 누계

법인 7,247

법인 16,922

내국인 · 외국인별
출원 (건수)

내국인 13,356

2019년 2월

내국인 29,923

2019년 누계

외국인 914

외국인 2,068

상표 등록 동향

건수, % (전년 동월/동기 대비)



9,586 (7.1)

2019년 2월

20,238 (9.4)

2019년 누계

■ 본 통계자료는 심사업무 처리를 위한 비공식 통계이며, 공식 통계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특허청 통계연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